

2019년도 제2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5.(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전문위원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함
 - 회의결과: 최승수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17건(안건번호 제2019-142465호~14322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42465호는 소설 복제물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성원영 전문위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성원영 전문위원 : 금번 회의는 의결 안건이 두개임
제1호 안건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이며, 제2호 안건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임

○ 제1호 :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성원영 전문위원 :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기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작권법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최승수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
- B 위원 :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지만 심의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는 최승수 위원님께서 분과위원장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함
- C 위원 : 이의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만장일치로 최승수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승수 위원을 선출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42465호~143227호로 21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총 1,417건임 안건번호 제2019-142465호는 저작권자로 보이는 민원인(실명)이 2019. 10. 29. 신고한 것으로 보호원은 2019. 10. 30.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안건은 ‘●●●’ 사이트 이용자가 2019. 9. 22. 국내 소설 ‘로어링 클라우드’를 5,000포인트에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은 소설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사이트 이용자가 소설 제목과 구매 포인트 등 정보를 게시하면 판매자가 비밀댓글을 작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하지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B 위원 : 저작권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함정을 파서 불법복제물을 일대일로 구매하겠다고 하여 판매자가 이메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시정권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이 있는데, 성매매나 마약 단속에서 그 적법성이 주로 논의됨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인 거래를 하는 업자라는 증거가 있다면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저작권자가 불법복제물 판매를 적극 유도한 경우라면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의 고의를 유발한 것이므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함정수사의 적법성 문제와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전송'이 있어야 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회성 일대일 거래는 전송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42465호 소설 복제물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2465호는 단순히 구매 사실 없이 의사를 밝힌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부결의견임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2465호는 '전송'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복제물

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원안과 같이, 소설 복제물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직접 내지 간접증거가 부족하므로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2465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2466호~142479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본문)과 불법복제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여 왔음

지난 2019. 4. 26. 개최한 전체심의위원회에서는 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심의위원회는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바 있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42466호~142479호 네이버 밴드에 소설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2466호~142479호는 소설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밴드에서 소설을 제공한 사안으로 소설을 실제 전송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가결의견임
- B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동의함
안건번호 제2019-142466호~142479호는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2466호~14247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2480호~14322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만화, 출판물,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SW 'Autodesk 3DS MAX 2020'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2567호는 웹하드에서 2020년도 버전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사안으로, 공식홈페이지에서 1년당 약 1,924,230원(세금 포함)에 판매 중임
(SW 'Autodesk AutoCAD 2020'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2586호는 웹하드에서 2020년도 버전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사안

으로, 공식홈페이지에서 비즈니스 사용자, 학생 또는 교사에 한하여 30일 무료 trial버전을 제공하고 있으나, 엄연히 공식홈페이지에서 1년당 2,009,315 원(세금 포함)에 판매 중임

(영화 '알라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2837호는 웹하드에서 2019. 5. 23.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를 판매한 사안임

(음악 '2002(가수: Anne-Marie)'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음원을 들려 주면서)안건번호 제2019-142854호의 음원파일은 2018. 04. 27. 발매된 곡으로 앨범 'Speak Your Mind (Deluxe)'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00곡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영화 '라이온 킹'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2888호는 밴드에서 2019. 7. 17. 개봉한 Walt Disney의 실사영화를 제공한 사안임(애니메이션 '라이온 킹'과는 다름)

해당 밴드는 '웹툰, 유머, 만화'와 같은 제목을 게시한 점에서 불법 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로 보임

(음악 'Senorita(가수: Shawn Mendes)'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음원을 들려주면서)안건번호 제2019-142908호의 음원파일은 2019. 06.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Señorita'에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곡의 작곡가는 Shawn Mendes, Camila Cabello 외 6인임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00곡의 빌보드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방송 '일로 만난 사이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42969호는 tvN 채널에서 2019. 08. 24.부터 2019. 10. 26.까지 방영한 9부작 예능 방송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3016호는 밴드에서 2019. 9. 11.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게임 '옥토파스 트래블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43133호는 웹하드에서 2019년에 발매된 최신 컴퓨터프로그램

게임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약 6만4천8백 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닌텐도임

(게임 '트로피코 6'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3207호
는 웹하드에서 2019년에 발매된 최신 컴퓨터프로그램 게임물을 판매
한 사안으로, 정품은 약 5만4천 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칼립소 미
디어임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42480호~14322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2480호~143227호는 모두 불법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
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
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함

- C 위원 : 이견이 없으며,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2480호~14322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
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2465호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

2019-142466호~14322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불법복제물등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19.

분과위원장 대행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